

玄.



民正黨改憲案 要綱 檢討意見

87. 7

## 1. 概括的 檢討

- 민정당 개헌안은 전반적으로 볼 때 當部가 민정당에 지원해 주었던 개헌안관련검토의견(안) 및 7.16 黨과 합의한 개헌안 주요내용을 골격으로 하고 있음
- 다만 當部와 합의된 사항과 다소 다른 부분과 여·야간의 이해 대립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 검토가 필요함
  - 대통령후보자 정당추천 요건규정 삭제
  - 국정감사권 인정
  - 비상조치권 삭제
  - 비례대표제 삭제
  - 대통령후보자의 국내 5년이상 거주 요건 등

## 2. 具體的 檢討

### 가. 大統領候補者 政黨推薦 要件規定 削除

(주장근거)

- 정당적 기반은 없더라도 국민적 지지를 받는 인사에게는 입후보 할 수 있는 길을 터주어 국민의 참정권 확대
- 국회의원의 무소속출마를 인정하는 것과 균형
- 양김이외에 在野人士(예컨대 문익환 등)가 출마할 경우 野黨(특히 김대중) 支持票를 分散시킬 수 있어 선거전략상 유리

(검 토)

- 후보자 추천을 빙자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사회질서를 혼란시킬 위험이 큼
- 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選舉公營制 시행에 많은 어려움 야기
- 정당설립이 아주 용이한 현행법하에서 국민적 신망이 두터운 인물은 新黨創黨이나 既存政黨의 推薦을 받아 얼마든지 출마할수 있음
- 정당설립도 못할 정도의 재야 인물이라면 비록 그가 출마하더라도 야당 지지표 분산에 도움을 준다고 기대하기 어려움
- 오히려 김대중에게 통민당입당이나 신당창당 없이 지역적 바람을 일으키면서 출마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것으로서 선거전략상 대단히 나쁜 결과 초래 우려
- \* 양김은 서로 출마의사를 굽히지 않는 가운데 표대결은 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는 바 만약 단일 후보조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김대중의 新黨創黨과 그 과정에서의 內紛·醜態가 필연적인 바  
이는 여당에 매우 유리한 소재로 작용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당 스스로 정당추천 요건을 삭제하려는 것은 選舉戰略上 問題가 있음
- 따라서 정당정치외 활성화 및 공정선거를 위한 선거공영제 실시라는 名分 擧揚이나 選舉戰略上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더우기 野黨에서 이를 거론하고 있지 않는데 구태어 與黨이 이를 주장할 필요는 없을 것임

## 나. 國政監査權 復活

(주장근거)

- 국회기능 강화
- 국민의 기대에 부응

(검 토)

- 국정감사제도는 세계 유례가 없고 삼권분립원칙에 배치되는 제도로서 과거 채택시(제3공화국) 엄청난 폐해 발생

\* 모든 관공서와 심지어 사기업체까지 “국정감사권” 행사라는 이름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業務空白狀態를 초래하였음은 물론 이를 무기로 政治資金을 강요하는 등 腐敗·墮落政治의 은상이 되었음

- 더구나 行政의 專門化 傾向으로 국회의 국정감사는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바 오히려 행정부내의 전문적 감사기관인 監査院의 자율적 감사에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임

- 국회기능의 활성화 문제는 국회의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解任議決權을 인정함으로써 그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국정감사권 주장의 논거로서는 부족함

- 문제는 많은 국민들사이에 국정감사권은 모든 선진국이 이를 인정하고 있는데도 유신시대때 국회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없애버린 제도로 오해하고 마치 國政監査權의 부활이 민주화의 일환인 것처럼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인 바

이는 앞으로의 토론과정에서 여당이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다고 보며 이를 소재로 野黨의 無政見性·黨利黨略性 및 腐敗心理를 공박하여 오히려 국민지지를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임

○ 따라서 이러한 국정감사제도의 부활주장은 재고되어야 하며 현행과 같이 특정사안에 대한 國政調查制度를 의연히 관철함이 바람직함

- 국정감사권을 인정하되 법률로 절차·시기·방법 등을 제한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 일단 국정감사권이 인정되면 그 제한에 관한 입법과정에서 여당이 공색해져 오히려 표를 잃게 될 우려가 있고
- 설사 입법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제한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국정감사권을 전부 인정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정치현실을 간과할 수 없음

\* 다만, 과거 국정조사권을 한번도 실시하지 아니한 운영상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 發動要件을 緩和하거나 6.29선언의 실천의지를 보이는 의미에서 지금부터라도 운영을 해 보이는 것이 좋을 듯함

#### 다. 非常措置權 削除

(주장근거)

- 정치적 남용 우려
- 戰時 등 비상시에는 계엄포고로 동일 조치가능
- 과거 6여년간 한번도 쓰지 아니한 제도이므로 구태여 둘 필요없음

(검 토)

- 남북분단과 북괴의 남침위협성이 상존하고 있는 특수안보상황하에서 국가적 위기를 효율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
  - 헌법에 국가긴급권을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고
  - 이것을 두지 않을 경우 국가적 위기에서 超憲法的 措置가 불가피하여 결국 憲法이 破壞되고 말 것이므로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를 두는 것이 타당
- 국가적 위기는 수십년에 한번 올까말까한 것이므로 과거 6년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니 없애자는 논리는 지난 30여년간 전쟁이 없었으니 군대를 없애자는 논리와도 같음
- 정치적 남용의 우려가 있다 하나 제5공화국의 예로 보아 정치적으로 남용되지 않았음은 이미 입증되었음
- 다만 비상조치권의 발동요건을 더욱 엄격히 하고 국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은 무방할 것임
- \* 대통령의 권력집중을 우려하고 과거 긴급조치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여 民正黨 支持度を 높이는데 필요하다면 비상조치권을 폐지하고 법률적 효력의 緊急命令權 · 緊急財政命令權만을 인정하는 것으로도 양보 가능

라. 比例代表制 削除

(주장근거)

- 정당의 자금조달이나 논공행상의 도구로 이용됨으로써 국회의원의 清廉度 低下, 派閥政治 深化 招來

(검 토)

- 득표율에 의한 배분이 불가피하거나 의석수 제1당에 대한 프리미엄배분이 어려울 경우 여당의 의석수 (비율) 증대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데 반하여

야당에게 많은 감투자리를 내주게 되어 야당의 정치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해 주고 부패·타락정치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 그러나 비례대표제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職域的 特殊利益을 대변하고 지역구 선거과열을 억제하며 지역기반없는 정당지도자·당내 참신인사 당선확보 등 政黨政治發展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의석수 기준으로 제1당에 다소간의 프리미엄을 주거나 단지 의석수 비율로 배분할 경우에도 국회에 보다 많은 輿圈人士를 등용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므로 輿圈 支持勢力 構築에 이바지 할 수 있음

- 따라서 이를 폐지하기 보다는 이 제도의 단점을 방지하고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재 검토하는 것이 좋을 듯함

마. 大統領候補者의 國內 5年이상 居住 要件

(주장근거)

- 대통령이 될 사람은 적어도 5년이상 거주하여 민심의 소재와 국가적·사회적 실정을 알고 있어야 함
- 미국의 경우에도 14년간의 국내 거주요건 요구

(검 토)

- 國政責任者가 될 사람은 적어도 일정기간 국내에 거주하여 민의의 흐름을 알고 국민과 고락을 같이 하면서 애국·애족심을 길러온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은 政治倫理上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현대와 같이 교통·통신이 발달한 시대에 반드시 국내에 거주해야 국내사정을 알고 애국심이 생긴다고 할 수 있는 냐는 논란의 소지가 있고

現 政治狀況에서 민정당이 이 규정을 고집할 경우 그 진의와는 달리 김대중의 출마를 금지시키기 위한 규정으로 오해 됨으로써

김대중의 사면·복권시켜 公正한 對決 (fair play)를 하겠다는 6.29선언의 참뜻이 퇴색되고 오히려 겉으로 사면·복권을 주장하면서 속으로 다른 꾀꾀이를 준비해 놓은 것으로 비난받을 위협성이 큼

- 따라서 민정당으로서는 헌법본문에 위와 같은 취지에서 그 요건을 두되 附則에 이번 선거에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헌법개정안에 분명히 규정 해 듭으로써 이와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得票에 유리할 것임